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3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10. 16.
4. 회부일자 : 2020. 10. 26.

II. 제안이유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주요내용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97,652,487	62,712,300	34,940,187	55.7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039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기금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¹⁾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것입니다.
- 당초 동 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85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신청사 건립 사업규모의 증가 및 사업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그리고 연수원 기본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기금의 조성액도 52억원 증가한 약 1,636억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1)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276억원 및 자체 예산 1,023억원 등 총 1,299억이 소요되며, 연수원 건립은 자체 예산 약 337.4억원이 필요한 상황임.

[표-1] 신청사 사업 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위치	용산구 두텁바위로27 (구, 수도여자고등학교)	좌 동		
대지면적	13,214.2㎡	좌 동		
건축연면적	39,967.6㎡	40,800.92㎡	증833.32㎡	
총사업비	교부금	400억	276억	감 124억
	자체재원	847억	1,023억	증 176억
	합계	1,247억	1,299억	증 52억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 현재까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56억 3백만원과 이자수입 16억 2천 1백만원 등 672억 2천 4백만원의 조성액 중 사업비 집행액 90억 5천 8백만원을 제외한 총 581억 6천 6백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표-2]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a)	전입금	이자 수입	계(b)	비용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6	5,927,675	5,908,775	18,900	0	0	0	5,927,675
2017	12,005,511	11,930,655	74,856	43,898	43,898	0	11,961,613
2018	28,368,649	27,957,862	410,787	967,182	967,182	0	27,401,467
2019	7,820,340	7,526,520	293,820	3,500,484	3,500,484	0	4,319,856
2020	13,101,689	12,279,104	822,585	4,546,602	4,546,602	0	8,555,087
계	67,223,864	65,602,916	1,620,948	9,058,166	9,058,166	0	58,165,698

나. 수입계획

[표-3] 2021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21년 수입액	'20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자체수입(20000)				484,280	822,585	△338,305	
	이자수입(24000)			484,280	822,585	△338,305	
		이자수입(24100)		484,280	822,585	△338,305	
		예금이자수입(24101)		484,280	822,585	△338,305	
기타(40000)				58,165,698	49,610,611	8,555,087	
	예치금회수(42000)			58,165,698	49,610,611	8,555,087	
		예치금회수(42100)		58,165,698	49,610,611	8,555,087	
		예치금회수(42101)		58,165,698	49,610,611	8,555,087	
내부거래(50000)				39,002,509	12,279,104	26,723,405	
	전입금(51000)			39,002,509	12,279,104	26,723,405	
		전입금(51100)		39,002,509	12,279,104	26,723,4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51102)		39,002,509	12,279,104	26,723,405	보통교부금 276억 포함
수입 합계				97,652,487	62,712,300	34,940,187	

- 2021년도 동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액은 976억 5천 2백만원으로,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90억 2백만원과 이자수입 4억 8천 4백만원 및 2020년도 기금조성액(예치금) 581억 6천 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세부내역(〔붙임〕 참조)은 강남구 도곡동 토지매각 비용 60억원과 기타매각 비용 54억 3백만원 및 보통교부금 276억원으로, 이는 2020년 동 기금운용계획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액 대비 267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 규모는 교육부로부터의 보통교부금 276억 원을 포함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제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전입금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8억 7천 7백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 특히 차년도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 예정액 중 천연동 116번지와 수색동 129-2 등은 필지에 대한 처분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처분방식의 결정에 따른 수입액이 변동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수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 밖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은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²⁾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의 수입계획 작성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지출계획

- 2021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976억 5천 2백만원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등 건설비 331억 6천 5백만원과 예치금 644억 8천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신청사 설계비 1천 4백만원과 시설비 313억 1천 3백만원, 감리비 16억 3천 9백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억원으로, 전년도 신청사 건립비용(45억 4천 7백만원)보다 286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 이와 같은 지출의 증가는 당초 금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시설사업 시행시기가 건축인허가 지연으로 설계용역을 일시중지 하는 등 사업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일정이 지연된 후 내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3)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4] 2021 신청사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세부	세부항목	'21년 지출액	'20년 지출액	증감
본청시설관리(신청사 건립)		33,165,303	4,546,602	28,618,701
	설계비(420-01-02)	13,784	1,618,020	△1,604,236
	시설비(420-03)	31,312,755	2,327,881	28,984,874
	감리비(420-04)	1,638,764	348,148	1,290,616
	시설부대비(420-05)	200,000	252,553	△52,553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비와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부지의 높은 토지비 및 조경면적 확보 등 협소한 입지 여건의 제약으로 지하주차장 규모의 변경과 그에 따른 지하층 토목공사비가 증가되었고,

또한 인허가 추진중 시설내부 일부 구간에 대한 건축연면적 합산으로 인해 사업규모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사업추진 기간의 연장으로 총사업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표-5] 중투심 기준 신청사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 현황

구분	당초 (‘19중투심)	변경	증감	비고
사업규모(m ²)	39,967.6	40,800.92	833.32	
사업비(억원)	2,003 (1,321)	1,981 (1,299)	△22	()용지비제외

- 이처럼 신청사 건립은 사업규모가 중앙투자심사 당시 보다 증가 (833.32m²)됨에 따라 현재 중앙투자심사 조건(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부지여건상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바, 금년 12월에 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신청사 사업의 지연 및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변경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수입계획에 따른 기금의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연수원 건립은 당초 제주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부적정 결과⁴⁾가 나옴에 따라 건립지를 평창으로 변경하고, 이용대상을 교원에서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및 기간제교원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초등교육과-12603, 2020.8.31.)하였습니다.

4) ‘2019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823(2019.10.1.)

사업명	결과	부대 의견
서울교육청 청사이전	조건부	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
제주평화힐링 연수원 설립	부적정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 이에 따라 연수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설계공모 및 건축인·허가, 공사착공 등의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동 기금계획안에는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운용에 대해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이처럼 동 기금의 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출은 2022년부터 발생될 계획으로 당장 내년에는 재정지출 계획은 없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세수감소 등 교육재정 전반이 불안정한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재정투자가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재정 전반과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6] 2021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세부	세부항목	'21년 지출액	'20년 지출액	증감
	직속기관시설관리(연수원 건립)	0	0	0
	토지매입비((410-01)	0	0	0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공유재산 처분 내역)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재산명 또는 소재지	면적 (m ²)	납부자명	납부구분	2021년 기준 분납회차	처분 (예정) 금액	2021년도 징수 예정액
1	매각	강남구 도곡동 산 6-40	1,917	강남세브란스 병원	일납	-	6,000,000	6,000,000
2	매각	동대문구 전농동 45-43	34.5	이○○	분납	20회차 중 14회차	135,240	6,086
3	매각	동대문구 휘경동 302-9	15	윤○○	분납	10회차 중 5회차	44,545	4,009
4	매각	북아현동 3-489	20	김○○	분납	10회차 중 6회차	63,051	5,675
5	매각	천연동 116	148.8	서대문구청	미정	-	394,500	394,500
6	매각	수색동 129-2 외	1,448	수색7구역 조합	미정	-	4,821,840	4,821,840
7	매각	아현동 386-113	9	이○○	분납	5회차 중 5회차	77,477	13,946
8	매각	신수동 371-28	89	정○○	분납	10회차 중 5회차	660,057	59,405
9	매각	구로구 구로동 511-11	23	이○○, 강○○	분납	3회차 중 3회차	66,332	19,900
10	매각	용산구 보광동 3-89	147	하○○, 이○○	분납	10회차 중 10회차	41,273	20,645
11	매각	동작구 본동 133-83	27	조○○	분납	7회차 중 6회차	119,610	17,087
12	매각	동작구 본동 133-83	43	정○○	분납	7회차 중 6회차	168,622	28,103
13	매각	동작구 흑석동 245-34	376	흑석9구역정비 사업조합	미정	-	1,981,520	-
14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7	40.7	김○○	분납	20회차 중 18회차	6,992	2,331
15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50	49	손○○	분납	20회차 중 18회차	7,892	2,631
16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49, 성북구삼선동3가50-51	49.3	최○○	분납	20회차 중 18회차	7,741	2,580
17	매각	강북구 미아동 791-4809	12	공○○	분납	5회차 중 3회차	15,087	3,772
계(18필지)							14,368,942	11,402,509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62호, 2016.12.29.,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